

의안번호	2219917
의 퇴 인	박상혁의원
회 답 일	2026. 8. 25.
추계번호	26B35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제2항) <u><신 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정보통신망의 규모,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	의무규정
2	안 제47조의6(정보 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정부는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u>2천만원의 범위</u> 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대상에 공공기관 포함(안 제47조제2항)

- 현행법¹⁾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전년도 매출액·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참고자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개요’ 참조

-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²⁾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정보통신망의 규모,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임

- 2026년 기준 공공기관의 수는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58개, 기타공공기관 254개 등 총 342개임

1)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표 1] 공공기관 지정 현황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① 공기업	32	31	30
■ 시장형	14	14	14
■ 준시장형	17	17	16
② 준정부기관	55	57	58
■ 기금관리형	12	12	12
■ 위탁집행형	43	45	46
③ 기타공공기관	240	243	254
계	327	331	342

자료: 재정경제부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는 공공기관의 수,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여부 및 규모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 선정 기준, 국가의 재정 지원 여부 및 규모 등에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 상향(안 제47조의6제1항)

- 개정안은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상향(현행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하여 지급액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액 증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³⁾은 정부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포상금

3) 법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① 정부는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지급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⁴⁾은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보호 취약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사고의 범위·정도, 해당 정보보호 취약점의 악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금의 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금의 지급 현황(2023~2025년)

(단위: 건)

지급 구간	2023년	2024년	2025년
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232	345	35
1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112	59	122
3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	103	55	64
70만원 이상 ~ 120만원 미만	71	75	253
120만원 이상 ~ 180만원 미만	11	40	125
18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24	24	119
250만원 이상 ~ 330만원 미만	7	9	19
330만원 이상 ~ 420만원 미만	3	2	17
420만원 이상 ~ 510만원 미만	0	1	20
51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3	1	4
600만원 이상 ~ 690만원 미만	0	0	3
690만원 이상 ~ 780만원 미만	0	0	0
780만원 이상 ~ 870만원 미만	0	0	0
87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0	0	0
합계	566	611	781

주: 신고자 1명이 여러 건의 취약점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지급구간별 지급건수로 산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시행령 [별표 4의2]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

- 나. 지급 기준포상금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보호 취약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사고의 범위·정도, 해당 정보보호 취약점의 악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발생할 포상금 지급건수 및 건별 지급액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는 이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건별 지급액은 지급 범위에서 침해사고의 범위·정도, 해당 정보보호 취약점의 악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어 포상금 지급액은 매건마다 상이하게 산정되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참고자료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 목적

-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기관)이 스스로 수립·운영 중인 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

□ 주요 내용

- 의무대상 : 주요 ISP, IDC,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자 등(정보통신망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구분	상세내용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ISP)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집적통신시설 사업자(IDC)	■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정보 제공자 /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①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며, -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재학생 수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③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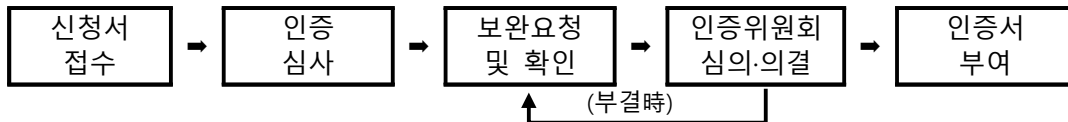
- 인증기준 : ISMS(80개), ISMS-P(101개)

구분	ISMS	ISMS-P	인증기준(101)	ISM S	ISMS- P
인증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인증기준(101)		
인증 마크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	O	O (101)
			보호대책 요구사항(64)	(80)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21)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의 인증기준(80개)에 개인정보보호 항목(21개)을 추가(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

□ 인증 절차 및 방법

- 서면 및 현장 심사의 방법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인증서 부여



□ 인증·심사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인증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개인정보보호협회·차세대정보보안인증원(심사기관)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현황(2024년 기준)

대상기관	인증 사업자 수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17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7
3.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484
4. 기타 (자율 인증)	410
합 계	948

[참고자료 2]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

(자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

가. 지급 대상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침해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으로서 아직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이하 “신규정보보호취약점”이라 한다)을 신고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나. 지급 기준

포상금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보호 취약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사고의 범위·정도, 해당 정보보호 취약점의 악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2. 포상금의 지급 절차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취약점의 신고를 받으면 신고내용 등을 바탕으로 그 취약점이 신규정보보호취약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된 정보보호 취약점이 신규정보보호취약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야 한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된 정보보호 취약점이 신규정보보호취약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호나목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하고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포상금의 환수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가. 신고한 정보보호 취약점을 일정 기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나. 내부 정보 활용, 사전 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취약점 정보를 획득하여 신고한 경우
- 다.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라.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 포상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